

---

---

# 건설업 기가입 노동자용 신청 서식

---

\* 고용보험에 새롭게 가입하는 건설업 노동자용인 경우는 '고용보험에 새롭게 가입하는 노동자용 신청 서식' 이용 바람

---

## 1. 일자리 안정자금 신청서

---

---

## 2. 일자리 안정자금 체크리스트

---

---

## 3. 개인정보 제공 및 활용 동의서 (공동사업자인 경우만 제출)

---

### 일자리 안정자금 신청서

※ 유의사항 및 작성방법은 제1쪽 뒷면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색상이 어두운 난은 신청인이 기재하지 않습니다. (제1쪽 앞면)  
※ 동 서식은 고용 및 산재보험 토달 서비스를 통해서만 신청 가능합니다.

접수번호	접수일	일자리관리번호	처리기간	18일	
공통	사업장	고용보험관리번호	법인등록번호	사업자등록번호	
		명칭	전화번호	FAX번호	
		주소 (□□□□□)			
		업종	업태	상시근로자수 사업개시일	
	대표자	성명		주민(외국인)등록번호	
		자택 (□□□□□)		휴대전화	
계좌	은행명		예금주명		
			계좌번호		
지원금 결정 통지 방법	고지 방법 [ ] E-mail [ ] 우편수령 [ ] 휴대전화(SMS) 등		지급희망일 (YYYY.MM)		
	받는곳 (E-mail, 주소, 휴대전화)		지급희망일 (2회분 이후)	<input type="checkbox"/> 10일 <input type="checkbox"/> 20일 <input type="checkbox"/> 30일	

- ※ 지급희망일은 신청인이 최초로 지급받고자 하는 해당월을 기재하시면 됩니다.
- ※ 최초신청 시 선택한 지원금 지급희망일(2회차 이후)은 이후 변경하지 못합니다.(직접수령 시만 지급희망일 선택)
- ※ 최초신청 이후 근로자 제외·변경사항 발생 시 '일자리 안정자금 근로자 변경 신고서'로 신고하셔야 합니다.

#### 매월말일 근로자수

신청월 전년도			신청월 해당연도											
10월	11월	12월	1월	2월	3월	4월	5월	6월	7월	8월	9월	10월	11월	12월

#### 지원 신청 대상근로자(일용근로자 별도 작성)

성명	주민번호 (외국인번호)	입사일 (YYYY,MM,DD)	수습/감사 단속근로자	주 소정근로시간	월평균보수 (원)	정액급여(원)
			3월 <sup>초</sup> 민수습 □ 감사단속 □			월급 □ 시간급 □ 주급 □
			3월 <sup>초</sup> 민수습 □ 감사단속 □			월급 □ 시간급 □ 주급 □
			3월 <sup>초</sup> 민수습 □ 감사단속 □			월급 □ 시간급 □ 주급 □
			3월 <sup>초</sup> 민수습 □ 감사단속 □			월급 □ 시간급 □ 주급 □

위와 같이 일자리 안정자금을 신청하니 상기 계좌로 지원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구비서류: 1. 근로계약서 및 신청대상 근로자의 임금지급 내역(임금지급대장 또는 무통장입금증 등) 각 1부.

2. 사업자등록증(사업자등록증이 없는 경우 사업체 확인 가능서류(예> 농업경영체 증명서 등)) 1부.

(필수) 일자리 안정자금과 관련하여 담당직원이 「전자정부법」 제36조 제2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뒷면의 담당직원 확인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동의 □ 부동의 □)

(필수) 유사사업 중복방지 등을 위해 지원금액 1천만원 이상 사업(주)는 보조금통합관리망(e-나라도움)에 지원내역 등이 공시됨에 동의합니다. (동의 □ 부동의 □)

(동의하지 않는 경우 지원금이 지급되지 않습니다.)

년 월 일

신청인(사업주)

(서명 또는 인)

보험사무대행기관

(서명 또는 인)

근로복지공단 지역본부장(지사장) 귀하

210mm×297mm[백상지(80g/m<sup>2</sup>) 또는 중질지(80g/m<sup>2</sup>)]

### 공동사업자 현황

번호	성명	관계	주민(외국인)등록번호	취임일	주소	전화번호
					우편번호( )	
					우편번호( )	

#### 담당직원 확인사항

- ▶ 정보가 필요한 사유 : 일자리 안정자금 대상 사업주의 지원요건 해당 여부 판단
- ▶ 동의할 개인정보(이용 방법 : 해당 자료를 수집·처리하는 행정기관에 정보제공 요청)
  - 「국세기본법」 제81조의13제1항제7호에 따른 급부·지원 등을 위한 자격의 조사심사 등에 필요한 과세정보(부가가치세법·법인세법·소득세법상의 사업자등록, 법인세법상의 당기순이익, 소득세법상의 사업소득금액, 소득세법상의 근로소득 지급명세서금액)
  - 「주민등록법」에 따른 주민등록자료 및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가족관계등록 자료
  -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국민연금법」 및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른 보수신고 관련 자료

#### 작성방법

1. '상시근로자수'란에는 지급희망월 이전 3개월 말일 기준 평균근로자수를 기재하셔야 합니다.  
(일용근로자가 있는 경우 월 사용한 연인원을 22.3일로 나누어 상용근로자수에 합산)
2. 사업개시일은 사업자등록증상 개업연월일을 기재하시면 됩니다.
3. 공동사업자가 있을 경우 반드시 대표 및 대표자와의 관계를 기재하여 주시고 개인정보 활용 동의서는 별도로 제출해 주셔야 합니다.
4. '지급희망일(2회분 이후)'란은 2회차부터 매월 지급 받고자 하는 일자리를 선택하여 주시면 됩니다
5. '매월말일 근로자수'는 신청일 전월까지 사용한 매월말일 현재 근로자수를 기재하시면 됩니다.
6. '월평균보수'란은 지급신청월이 속한 해에 지급하기로 한 보수총액을 해당 근무개월수로 나눈 금액 기재하시고, 주소정근로시간은 근로자와 사용자간 근로하기로 미리 정한 시간(주 근무일수×일 소정근로시간)을 기재하시면 됩니다.
7. 정액급여는 소정근로시간에 대해 정기적·고정적으로 지급받기로 한 보수의 합계를 기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정액급여 : 기본급, 직급수당, 근속수당 등, 정액급여 제외 : 연월차수당, 상여금, 야근수당 등)

#### 유의사항

1. 신청일 이후 근로자수가 증가하여 30인 이상이 되더라도 연속 3개월 30인이 되지 않는 경우 지원 중인 근로자는 계속 지원됩니다.(최대 29인까지 지원 가능)
2. 지급희망월 직전 3개월간 매월 말일 근로자수가 30인 미만인 경우 지급희망월부터 지급됩니다.

#### 처리절차





## 일자리 안정자금 체크리스트

- 일자리 안정자금은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사업주의 경영부담 완화를 위해 정부에서 인건비의 일부를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 위 지원금은 아래 해당요건을 모두 충족하여야 지급됨을 알려 드리며, 요건 충족 시 굵은 선 안의 체크표시에 진하게 표시해 주시면 됩니다.

<input type="checkbox"/> 사업장 요건	예	아니오
1. 지급희망월 직전 3개월간 매월 말일 기준 근로자수가 평균 30인 미만입니다.		
2. 30인 요건 충족을 위해 인위적 감원이나 사업장을 분할하지 않았습니다.		
3. 전(전)년도 과세소득 5억원을 초과하지 않습니다. (개인: 사업소득금액, 법인: 당기순이익)		
4. 임금체불 중 또는 임금체불로 명단 공개중이 아닙니다.		
5. 국가 및 공공기관이 아닙니다.		
6. 국가 등으로부터 지원이 제한되는 사업의 인건비를 지원받은 사실이 없습니다.		
7. 모든 근로자에게 최저임금 이상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input type="checkbox"/> 근로자 요건(반드시 개인별로 판단하여야 합니다)		
1. 신청대상 근로자별 월평균보수가 190만원 미만입니다.		
2. 신청대상 근로자는 모두 1개월 이상 고용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3. 신청대상 근로자는 사업주의 배우자 또는 사업주의 직계존비속이 아닙니다.		
4. 고용보험 가입대상인 근로자는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습니다.		
5. 기존 근로자는 최소한 전년도 보수수준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유의사항

- ① 근로자의 퇴사, 소정근로시간 및 보수인상 등 지원요건이나 사업장 소재지 등 변동이 발생할 경우에는 반드시 변경신고를 하여야 합니다.
- ② 일자리안정자금 신청 이후 고용감소 시 고용유지 노력을 소명하여야 합니다.

위 내용을 충분히 이해하였으며,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일자리 안정 자금 신청을 하여 지원금을 수령할 시 지원금 환수와 더불어 그 금액의 5배의 제재부가금이 부과될 수 있음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사업주) : (서명 또는 인)  
 보험사무대행기관: (서명 또는 인)

근로복지공단 (본부장)지사장 귀하

## 개인정보 제공 및 활용 동의서

기본사항	사업장	고용보험관리번호	명칭	사업자(법인)등록번호	
	소재지	(□□□□□)			
	성명				주민(외국인)등록번호
	공동사업자	주소			
		휴대전화			이메일

1. 상기 본인은 일자리 안정자금 신청과 관련하여 사업주의 지원요건 해당여부 판단을 위해 본인에 대한 개인정보를 제공하고 활용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2. 수집정보 활용

- 임금체불명단 공개중인 사업주
- 「국세기본법」 제81조의13 제1항 제7호에 따른 급부·지원 등을 위한 자격의 조사·심사 등에 필요한 과세정보(부가가치세법·법인세법·소득세법상의 사업자등록, 법인세법상의 당기순이익, 소득세법상의 사업소득금액, 소득세법상의 근로소득지급명세서금액)
- 「주민등록법」에 따른 주민등록자료 및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가족관계등록 자료

년      월      일

신청인(공동사업자)

(서명 또는 인)

근로복지공단      지역본부장(지사장) 귀하